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0
----------	-----

2019. 4. 30.(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9년 4월 9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4월 18일

–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이경태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다음 달 계좌입금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직수당 지급 조항 개정 (제3조)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숙직비 미지급

- 단,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경우 30,000원을 지급

※ 일직(09:00~18:00)·숙직(18:00~익일09:00) 근무자 당직수당 : 50,000원

○ 당직수당 지급시기 조항 개정 (제4조)

- 그달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

※ (기존) 현금 당일 지급 → (변경) 계좌입금 다음 달 10일 이내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호식)

○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다음 달 지급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숙직비를 미지급하고, 다만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경우 30,000원을 지급하며,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60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4월 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0
----------	-----

제출연월일 : 2019년 4월 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다음 달 계좌입금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당직수당 지급 조항 개정 (제3조)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일·숙직비 미지급
 - 단,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경우 30,000원을 지급
 - ※ 일직(09:00~18:00)·숙직(18:00~익일09:00)근무자 당직수당 : 50,000원
- 당직수당 지급시기 조항 개정 (제4조)
 - 그달 당직근무자의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
 - ※ (기존) 현금 당일 지급 → (변경) 계좌입금 다음 달 10일 이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3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급시기) 그달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규정 발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일·숙직비>

- 일·숙직비는 1일(야)당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 다만,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일·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